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38
----------	-----

2020. 6. 24.(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황규철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2020년 5월 29일
- 다. 회부일자: 2020년 6월 1일
- 라. 상정일자: 2020년 6월 10일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황규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와 학생·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함양과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교육 등(안 제5조)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안 제6조, 안 제7조)
- 실태조사(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충북도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응급 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응급처치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점검 및 사용내역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안 제9조에서는 응급처치교육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에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실시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서 한 발 나아가, 응급처치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원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6. 10. / 김영주 의원
- 수정이유
 - 조례안 제9조의 ‘응급의료지원센터’와 ‘119’는 정식 기관 명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으로 순화하여 표기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 수정내용
 - 제9조 중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지원센터, 119 등의 유관 기관과 관련 전문 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으로 수정함

8.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응급처치”란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 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데 쓰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3. 응급처치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5. 응급처치 및 재난사고 대비 교육 추진 예산확보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 나목, 다목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하는 등의 실습교육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응급처치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체험과 실습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모든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시와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 관리)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자동심장충격기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과 사용내역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과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지원센터, 119 등의 유관기관과 관련 전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39호, 2019. 4. 23., 일부개정]

-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②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 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직원 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삭제 <2015. 1. 20.>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교육시간·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삭제 <2015. 7. 21.>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 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⑤ 학교장이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안전교육기관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 [교육부고시 제2019-214호, 2020. 1. 1., 일부개정]

제3조(학생 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 과 【별표 2】 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2. 규칙 제2조제5항 각호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단체 소속 직원
3.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영역별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관련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국가자격을 취득·유지할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1(재난대비훈련)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적보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서식1-1>과 <서식1-2>, <서식1-3>을 활용하여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와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9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

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 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령 제711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시행 2020. 3. 1.] [법률 제1687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5조)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 교육감은 모든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3. 미첨부 사유

-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5조(교육 등), 제6조(응급장비설치 등)에 따른 비용은 충북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
- 2017년 도내 모든 학교에 자동제세동기 보급, 2018년 이후 신설학교 자체 구입하여 구비함.
- 학교운영경비로 교직원 응급처치교육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경비 편성함.

4. 작성자: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지원센터, 119 등의 유관기관과 관련 전문 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으로 한다.

